

참고

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Q&A

※ 본 질의응답은 입법(행정)예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 시 내용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질의응답

Q1 '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' 제도란?

A1 ○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,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('24.5.20. 시행)임
- (법적 근거)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2조 제4항

Q2 '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' 제도 도입 이유는?

A2 ○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한 환자 안전 확보
- 동명이인,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하여 진료할 경우,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
- 타인명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자의 약물 오남용 방지
○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화 기여
-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(외국인 등)의 진료에 따른 재정누수 방지
< 최근 5년간 부정사용 현황(외국인 포함)>

'23.12.31.기준(단위: 명, 건, 백만원)

구분	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적발인원	3,217	878	563	536	586	654
결정건수	176,474	41,247	31,433	32,605	30,771	40,418
결정금액	4,066	1,178	738	670	628	852

주) 결정년도 기준, 결정건수: 요양급여비 청구 명세서 건수 기준

<관련 사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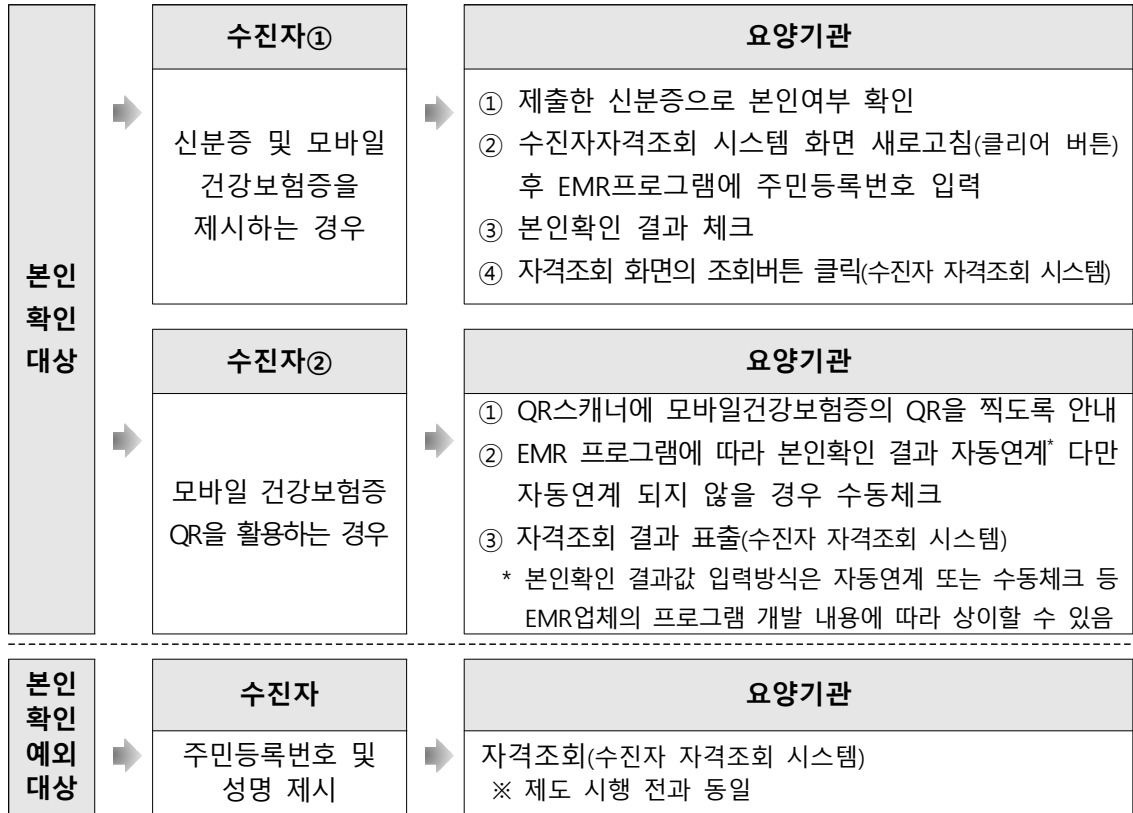
- "환자 주민번호로 5년간 '졸피뎴' 1만7천여정 처방받아"('18.12.10., 파이낸셜뉴스)
- "10년 동안 다른 사람 건강보험 7백여 차례 도용...50대 여성 검거"('21.12.21., KBS)
- "10년간 타인 명의로 병원 드나든 50대 여성, 징역 6개월"('24.3.23., new1)
- "사망자 명의 도용 마약류 처방 ... 감사원 위반 사례 적발"('24.1.11., 의협신문)

Q3

수진자 내원 시 본인확인 절차는?

A3

- 요양기관이 진료 전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환자의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 후 접수
 - 본인확인: 증명서의 인적사항(생년월일·사진 등)을 통해 본인확인
 - 자격확인: 공단의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



Q4

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는 신분증의 종류는?

A4

- (실물증)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국가보훈등록증, 건강보험증, 외국인등록증,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(F-4), 영주증(F-5) 등
 - (모바일) 모바일 건강보험증(QR인증 포함), 모바일 신분증(운전면허증, 국가보훈등록증), 모바일 확인서비스*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에 등록된 신분증 제시의 경우도 인정 * (서비스업) 정부24, PASS, KB스타뱅킹 등
- ※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,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실물증의 경우 원본만 인정하고 사본(촬영된 신분증) 인정 불가

Q5 **건강보험증은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는지?**

A5

- **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가능**
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증은(종이·모바일 모두 포함)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 가능함
 - 다만, 해당 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2제4항)

Q6 **본인확인 예외 대상은?**

A6

- 19세 미만
-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
- 처방전에 따라 약국(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 포함)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
- 진료의료·회송환자
- 응급환자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)
-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*하는 경우로 정함
 … (법적 근거) 시행규칙 개정안(제7조의2 제5항)

* 「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안」 행정예고('24.5.2.~5.16.)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
-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

Q7 본인확인 예외사항 중 6개월 이내 재진환자의 기준은?

A7

○ 본인확인 예외대상의 재진환자는 '24.5.20. 이후 본인확인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요양기관을 내원한 환자임

※ 환자의 상병에 근거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기준에 따른 재진과 상이함

예1) '24.5.20. 이전, 6개월 이내 해당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지라도 '24.5.20. 이후 본인확인 대상임

① '24.5.17.진료 → '24.5.20.내원 시 본인확인 필요

② '24.5.20. 본인확인 후 진료 → '24.11.20. 진료받을 경우, 본인확인 필요.

계산식: 5월20일~6월19일(1개월), 6월20일~7월19일(2개월), 7월20일~8월19일(3개월), 8월20일~9월19일(4개월), 9월20일~10월19일(5개월), 10월20일~11월19일(6개월)

※ **진료당일(초일) 포함, 일 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계산**

예2) '24.5.20. 이전부터 계속 입원 중인 경우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됨
그러나, 퇴원 후 6개월 경과와 관계없이 내원 할 경우 본인확인 대상
단, '24.5.20. 이후 본인확인 후 입원하였을 경우 퇴원일 후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임

Q8 진료의뢰·회송서에 의한 환자의 경우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지?

A8

○ 진료의뢰·회송을 의뢰한 병·의원에서 본인확인을 해야 하고,

○ 환자의 진료 의뢰·회송서를 받은 병·의원의 경우, **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와서 진료하는 최초 1회 진료는 본인확인 예외대상임**

다만, 동일한 환자가 해당 병·의원에 다시 내원할 경우(6개월 여부와 관계없이) 본인확인을 실시해야함

Q9 비급여로 진료 받는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지?

A9

○ **비급여 진료의 경우 본인확인 대상이 아님**

- "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."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어,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즉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본인확인 대상임

Q10	<p>대리처방의 경우도 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확인 대상인지?</p>
A10	<p>○ 대리처방의 경우 본인확인 대상이 아니며, 건강보험법이 아닌 의료법의 적용을 받음(「의료법」 제17조의2, 「의료법 시행령」 제10조의2,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1조의2) - 현행 대리처방 요건(의식불명, 거동곤란 등)에 맞게 대리인(직계존비속, 시설근무자 등)이 관련 서류(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지참하여야함.</p>
Q11	<p>비대면진료의 경우 본인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?</p>
A11	<p>○ (비대면진료 시 본인확인 방법) ① (화상진료)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활용하여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② (전화통화 진료)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, 이메일,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※ 비대면 진료의 경우,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, 금번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와 관계없이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지침에 따라 실시</p>
Q12	<p>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?</p>
A12	<p>○ 요양기관에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음 ○ (과태료)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- 1차 위반(30만원), 2차 위반(60만원), 3차 위반(100만원), …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○ (부당이득금) 증 대여·도용 적발 시,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…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(부당이득의 징수) - 단순히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이득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수진자의 증도용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과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미이행 요건이 전부 충족될 경우 수진자⊕요양기관에 연대 고지</p>

Q13 **수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·대여하여 진료 받은 경우 요양기관의 책임은?**

A13

-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하였을 경우(거짓확인 제외), **요양기관에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음**

※ 증대여·도용 시 수진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

Q14 **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?**

A14

- 휴대폰을 활용한 **모바일건강보험증 설치 후 활용 안내**
 - 구글 플레이스토어 /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'모바일건강보험증' 검색 → 설치
- **전액 본인부담(공단부담금+본인부담금)으로 진료 받은 후,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 서류(진료비 영수증 등) 지참하여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금액정산 안내**

Q15 **신분증 제시 거부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?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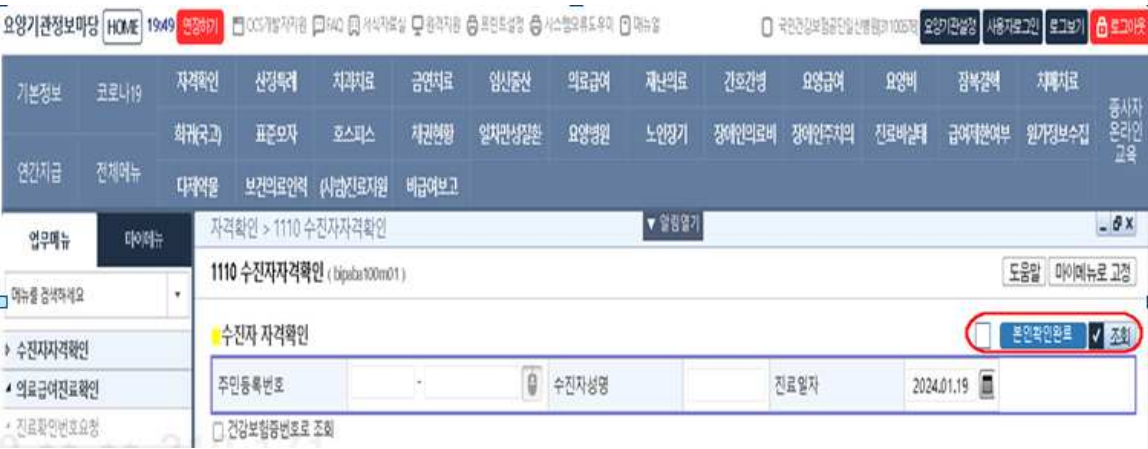
A15

-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**일반 수가(비급여)를 적용한 진료 안내**
신분증 미제출시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움을 안내하고, 신분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을 거부할 경우 일반 수가를 적용하여 진료 가능

Q16 **요양기관 본인확인 결과 관리 방법은?**

A16

- 본인확인 결과는 ① 전산 활용(요양기관 정보마당 및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) 또는 ② 수기 기록 등 **요양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관리 가능**
- (요양기관정보마당을 활용하는 경우)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자격확인시스템의 '본인확인완료 에 체크하여 관리
- 경로: 요양기관 정보마당>수진자자격확인-'본인확인완료



- (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) 요양기관 EMR화면에 '본인확인완료 체크박스를 추가 개발하고, 본인확인 체크 후 자격조회를 하면 결과가 연계됨
- ※ (게시) 요양기관정보마당>공지사항'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프로그램 설명 안내)
- (수기 기록) 진료기록부에 본인확인 여부를 기록

Q17 **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본인 확인용 지문판독기 사용(배부) 계획이 있는지?**

A17

- 지문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
-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은 관련 법령(국민건강보험법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,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)에 명시된 사항만 인정 가능함

Q18	외래에 붙여 놓을 수 있는 정부정책이 담긴 포스터 제작·배부 요청
A1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본인확인 강화 제도' 홍보물(포스터, 리플릿, 종이삼각대)이 5월3일부터 순차적으로 요양기관(약국, 보건소 제외)에 배부되고 있음 - 추가 배부 계획은 없으며, 추가분 필요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에 게시된 파일로 자체 제작
Q19	촬영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가능한지?
A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- 영상, 사진촬영 등에 의한 사본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불가
Q20	키오스크를 활용하여 환자 등록 및 수납 등의 업무처리를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,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여부
A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요양기관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음 - 요양기관 키오스크의 바코드 및 QR을 활용한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며,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은 어려우나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를 공단이 제공하고 있음(요양기관 정보마당)
Q21	본인확인 제도와 관련하여 공단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직통 전화 개설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?
A2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객센터(1577-1000)를 통한 응대 예정 - 시스템 문제 등으로 직통 전화 개설은 어려우며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한 응대 예정

신규 '모바일 건강보험증' 앱 관련 질의응답

Q1	'모바일 건강보험증' 앱 이란?
A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강보험증을 스마트폰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개발한 앱으로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여 진료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증임 - 모바일건강보험증 ⊕ 모바일자격본인확인QR인증으로 구성
Q2	'모바일 건강보험증' 앱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?
A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안드로이드폰)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- (아이폰)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②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→ 본인확인(휴대폰인증 또는 금융인증서) → 로그인 방법 설정[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* (패턴, 지문, 얼굴)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생체인증) 스마트폰 설정에서 생체인증을 먼저 등록한 후 사용가능
Q3	'모바일 건강보험증' 개발 배경은?
A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에 대비, 모바일 인증기술을 활용하여 간편한 본인 및 자격확인 수단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성 도모 ○ 'The건강보험' 앱에 탑재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으나, 쉽고 빠른 접속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용망 구축을 통한 '모바일 건강보험증' 앱 개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'The건강보험' 앱에 탑재된 건강보험증도 계속 사용 가능
Q4	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도 '모바일 건강보험증' 신규 앱을 이용할 수 있는지?
A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개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입자가 이용 가능
Q5	'모바일 건강보험증' 앱에 간편 로그인 수단이 있는지?
A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패턴, 지문, 얼굴 인식을 통한 생체인증 및 비밀번호 활용 수단이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스마트폰 설정에서 생체인증을 등록 후 사용 가능

Q6	요양기관에 방문해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을 어떻게 사용하는지
A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및 본인확인 후 로그인 상태에서 QR을 생성하여 30초 내에 요양기관의 인식기기(스캐너 등)에 근접시켜서 읽히면 제출됨 - 30초를 초과할 경우 화면터치를 통해 재생성 가능
Q7	키오스크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을 어떻게 사용하는지
A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 범용스캐너 및 키오스크에서 스캔이 가능함 ※ 스캐너 또는 키오스크와 단말기 간 연계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전산프로그램 개발 필요 - 키오스크의 바코드 활용을 위해 시스템 개선 중
Q8	모바일 건강보험증 QR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기의 종류는
A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 범용스캐너 및 키오스크에서 스캔 가능 ※ 스캐너 또는 키오스크와 단말기 간 연계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프로그램 개발 필요
Q9	모바일 건강보험증(QR코드 포함) 발급 및 이용 시 비용이 발생하는지?
A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든 비용은 무료(공단 부담)로 제공되고 있음
Q10	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식기가 없는 요양기관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는지?
A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QR코드 인식기가 없는 요양기관은 접수직원에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함 ※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서 표출하여 제출(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은 안됨)
Q11	시범사업 요양기관에 배부된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스캐너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?
A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부된 QR 스캐너는 배송일자로부터 1년간 무상 보증기간이며, 이 후에는 요양기관에서 유상으로 AS를 받아야 함 ※ 무상 보증기간에도 소비자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유상 AS를 받아야 함